#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92

발의연월일: 2022. 6. 22.

김상훈 · 김선교 · 김영식

유상범 • 이주환 • 정우택

홍문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휘발유, 경유 등 유류의 소비 억제를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,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, 가격 안정,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 물가 상승 현상의 일환으로 유가 역시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 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휘발유,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국민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 여하려는 것임(안 제1조제8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7항 중 "제2항"을 "제2항(제4호는 제외한다)"로 하고,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3항(종전의 제12항) 중 "제8항부터 제11항까지"를 "제9항부터 제12항까지"로 한다.

⑧ 제2항제4호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, 가격 안정,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1조(과세대상과 세율) ① ~ ⑥ 제1조(과세대상과 세율) ① ~ ⑥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 ⑦ 제2항(제4호는 제외한다)---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 여 경기 조절, 가격 안정,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 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 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 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 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 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 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 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 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 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 <신 설> ⑧ 제2항제4호의 세율은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, 가격 안정, 수급 조 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

# <u>⑧</u> ~ <u>⑪</u> (생 략)

①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,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
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
분의 70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
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
<u>있다.</u>
<u>⑨</u> ~ <u>⑩</u> (현행 제8항부터 제1
1항까지와 같음)
③ 제9항부터 제12항까지